

- 카.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·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9조)
- 타.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(안 제50조 및 제51조)
- 파.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2조 및 제53조)
- 하. 수소용품 제조·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·수치·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(상세기준)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4조)
- 거.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·공개·표시,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5조, 제57조 및 제58조)
- 너.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6조)
- 더.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 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3조)
- 러.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
- 전화 : 044-203-5396
- 팩스 : 044-203-4069
- 이메일 : luckyojy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(전화 044-203-5396) 또는 에너지안전과(044-203-52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-564호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수소산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육성하며,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942호, 2020. 2. 4. 공포, 2021. 2. 5, 2022. 2. 5. 시행)함에 따라,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- 나.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(안 제4조)
- 다. 수소연료공급시설·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라.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,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통계의 작성·관리, 해외진출·국제교류, 기술연구개발,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)
- 바.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·수소유통전담기관·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범위 및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)
- 사.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·등록신청서, 변경허가·변경등록·건강신고, 허가증,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)
- 아.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7조)
- 자.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개시 등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8조 및 제29조)
- 차.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작성·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, 심사, 이행 기록, 확인·평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)
- 카.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관한 완성검사신청서, 완성검사의 기준 및 완성검사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5조)
- 타. 수소용품 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,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, 합격표시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)
- 파. 유통중인 수소용품의 수집·검사, 회수·교환·환불·공표명령, 용도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)
- 하.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·교육기간·교육과정 및 안전교육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4조)
- 거.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기준, 완성검사 기준·절차, 정기검사 기준·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)
- 너. 수소용품 제조·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·수치·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(상세기준)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8조)
- 더. 수소용품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9조)
- 러. 수소판매가격의 보고·공개 방법,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
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

- 전화 : 044-203-5396

- 팩스 : 044-203-4069

- 이메일 : luckyojoy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(전화 044-203-5396) 또는 에너지안전과(044-203-52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19호

수도법 제7조의2(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(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) 및 제14조의3(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)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(환경부 고시 제2016-213호('16.11.28.) 및 환경부 고시 제2020-116호('20.6.1.)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,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·승인지역」 변경고시 행정예고

1. 지역·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

가. 지역·지구 등의 명칭 :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·승인지역

나. 최초지정일

- 공장설립제한지역(시행령 제14조의2) 및 공장설립승인지역(시행령 제14조의3제1호) : 2010년 11월 26일

- 공장설립승인지역(시행령 제14조의3제2호) : 2014년 11월 28일

2.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·승인지역 도면 변경

가. 변경 사유

1) 경북 문경시 문경(하리)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·승인지역을 해제

○ 2019. 10. 2.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(낙동강청)

- 문경(하리) 취수장(4,000m³/일) 폐지 및 문경(하리) 상수원보호구역 해제

○ 문경(하리) 상수원보호구역 해제(문경시 고시 제2019-192호)

○ 문경시 상수도사업소-8928(2020.9.3., “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”)